

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□ 제안이유

-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시한연장임
- 목적 : 새마을사업 지원

□ 주요골자

- 새마을사업을 위한 취득과 등기, 등록에 대하여 취득세, 등록세 면제
 -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
 - 취약지 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
 - 도로변 불량주택 정돈사업
 - 소도읍 가꾸기사업 등

□ 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